회계감사심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자율심리대상에 법정 의무감사업무 중 공익적인 감사업무를 추가하여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리대상에 농협중앙회·지역농협·지역축협·품목조합에 대한 감사업무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업무, 민간기금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,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감사업무,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를 추가함(규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).
- 나. 심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감사 인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실사 근거를 명문화 함(규정 제3조제2항, 제10조제3항)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3조(직무) 심리위원회는 다음 <u>각</u> 호	제3조(직무) ① 각 호
에 대한 심리업무를 수행한다.	를 대상으로 심리업무를
1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	<삭 제>
률」(이하 "외감법"이라 한다)에	
의한 감사보고서	
2. 공공기관 및 <u>지방자치단체에 대한</u>	2 지방자치단체의 감
<u>감사보고서</u>	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
3. 의료기관 및 <u>사학법인에 대한 감</u>	3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
<u>사보고서</u>	<u>감사보고서</u>
4.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	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농협중앙회, 지역농협, 지역축협,
	품목조합의 감사보고서
<u><신 설></u>	6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보고서
<u><신 설></u>	7. 「국가회계법」에 의한 민간기금관
	리주체의 감사보고서
<u><신 설></u>	8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
	한 정비사업 시행자의 감사보고서
<u><신 설></u>	9. 「주택법 시행령」에 의한 주택조
	합 및 관리주체의 감사보고서
5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	<u>10.</u>
하는 <u>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</u>	회사 등의
<u>등에 대한</u> 감사보고서 또는 <u>검토</u>	<u>검토보고서 등</u>
보고서	
<u> <신 설></u>	②심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
	심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
	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의 승인
	을 얻어 당해 감사인에 대하여 직무
	수행과 관련된 내부통제 등에 관한
	<u>실사를 할 수 있다.</u>

제10조(심리의 방법) ① · ② (생략)

<신 설>

제5조(의결사항 등) ①
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실사
결과 회계감사기
준 및 관계 법령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업무제한)
<u>심리 또는 실사 업무중</u>
<u>심리 또는 실사 업무를</u>
1.~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심리의 방법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는

정

개

부 칙

감사인을 방문하여 실시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